

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 등 준비기준 (제47조제1항 관련)

1. 유증기배출제어장치

가. 설계평가

나. 다음 부품에 대한 검사

- 1) 블로워, 압축기 또는 펌프 및 그 원동기
- 2) 데토네이션 어레스터 및 플레임 어레스터
- 3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로세스 용기
 - (가) 동체의 두께가 16mm 이상인 프로세스 용기
 - (나) 설계압력이 1MPa 이상인 프로세스 용기
 - (다) 설계온도가 150℃를 넘는 프로세스 용기
 - (라) 38℃에서의 증기압이 0.2MPa 이상인 물질을 수납하는 내용적이 0.5m³ 이상인 프로세스 용기
- 4) 소각기
- 5) 방폭기기(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기관 또는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승인된 기기는 면제할 수 있다)
- 6)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중요기기로 정하여 고시한 부품

다. 성능검사

- 1) 배출제한에 대한 성능검사
- 2) 각 관장치 및 압력용기의 누설검사
- 3) 안전 및 보호장치의 효력시험 등

2. 기름오염방지설비

검사 종류	검사 등 준비기준
정기검사	가. 기름여과장치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내용물 및 위험성 가스를 배출할 것 2) 배관·밸브 및 콕(이하 "배관등"이라 한다)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3) 펌프의 작동부분을 꺼내고 밸브상자를 개방할 것 4)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(최초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). 다만, 검정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는 생략한다. 5)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

6) 부속된 중요한 밸브 및 콕을 개방할 것

나. 유성찌꺼기저장장치 또는 선저폐수저장장치

- 1) 유성찌꺼기탱크 또는 선저폐수탱크의 맨홀을 개방하고 내용물 및 위험성 가스를 배출할 것
- 2) 배관 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
- 3)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

다. 선저폐수농도경보 장치 또는 선저폐수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

- 1) 유분농도계의 시료 채취관을 개방할 것
- 2)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
- 3) 제조자 또는 제조자가 위임한 자가 발행한 경보장치에 대한 교정 보고서를 준비할 것

라. 평형수배출관장치

- 1)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
- 2)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

마.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또는 기름농도감시장치

- 1) 유분농도계의 시료 채취관 및 유량계의 검출기를 개방할 것
- 2)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

바. 혼합물탱크장치

- 1) 탱크의 맨홀을 개방하고 내용물 및 위험성가스를 배출할 것
- 2) 내부의 적절한 장소에 안전발판을 설치할 것
- 3)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
- 4) 유수경계면검출기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

사. 분리평형수탱크

- 1) 분리평형수탱크의 맨홀을 개방하고 내용물 및 위험성가스를 배출할 것
- 2) 내부의 적절한 장소에 안전발판을 설치할 것
- 3)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
- 4)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(최초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)
- 5)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

아. 화물창원유세정설비

- 1)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
- 2) 펌프의 작동부분을 꺼내고 밸브상자를 개방할 것
- 3) 압력시험 및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
- 4) 부속된 중요한 밸브를 개방할 것

자. 화물창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화물창의 맨홀을 개방하고 내용물 및 위험성가스를 배출할 것 2) 내부의 적절한 장소에 안전발판을 설치할 것 3)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4)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(최초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)
제1종중간 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기름여과장치는 정기검사 가목1)·3)·5) 및 6)에 따른 준비를 할 것 나. 유성찌꺼기저장장치 및 선저폐수저장장치는 정기검사 나목1) 및 3)에 따른 준비를 할 것 다.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또는 선저폐수용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는 정기검사 다목1), 2) 및 3)에 따른 준비를 할 것 라. 평형수의 배출관장치는 정기검사 라목2)에 따른 준비를 할 것 마.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또는 기름농도감시장치는 정기검사 마목1) 및 2)에 따른 준비를 할 것 바. 혼합물탱크장치는 정기검사 바목1)·2) 및 4)에 따른 준비를 할 것 사. 분리평형수탱크는 정기검사 사목1)·2) 및 5)에 따른 준비를 할 것 아. 화물창원유세정설비는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자. 화물창은 정기검사 자목1) 및 2)에 따른 준비를 할 것
제2종중간 검사	정기검사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기름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작동시험과 정기검사 다목3)에 따른 준비를 할 것
임시검사 및 임시향해 검사	정기검사의 준비사항 중 해당 검사와 관련된 사항의 준비를 할 것

3.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

검사 종류	검사 등 준비기준
정기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유해액체물질·선박평형수의 배출관장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배관 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2)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나. 예비세정장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2) 펌프의 작동부분을 꺼내고 밸브상자를 개방할 것

	<p>3) 부속된 중요밸브를 개방할 것</p> <p>4) 압력시험 및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</p> <p>다. 수면하 배출장치</p> <p>1)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</p> <p>2) 펌프의 작동부분을 꺼내고 밸브상자를 개방할 것</p> <p>3)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</p> <p>라. 통풍세정장치</p> <p>1)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</p> <p>2)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</p> <p>마. 스트리핑장치</p> <p>1)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</p> <p>2) 펌프의 작동부분을 꺼내고 밸브상자를 개방할 것</p> <p>3) 부속된 중요밸브를 개방할 것</p> <p>4) 압력시험 및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</p> <p>바. 희석수주입장치</p> <p>1)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</p> <p>2) 펌프의 작동부분을 꺼내고 밸브상자를 개방할 것</p> <p>3)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</p> <p>사. 화물가열장치</p> <p>1)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</p> <p>2)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(최초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)</p> <p>아. 전용평형수탱크</p> <p>1) 전용평형수탱크의 맨홀 뚜껑을 개방하고 내용물 및 위험성가스를 배출 할 것</p> <p>2) 내부의 적절한 장소에 안전발판을 준비할 것</p> <p>3)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</p> <p>4)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(최초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)</p> <p>5)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</p> <p>자. 화물창</p> <p>1) 화물창의 맨홀을 개방하고 내용물 및 위해성가스를 배출할 것</p> <p>2) 내부의 적절한 장소에 안전발판을 설치할 것</p> <p>3)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</p> <p>4)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(최초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)</p>
제1종중간 검사	가. 유해액체물질·선박평형수의 배출관 장치는 정기검사 가목2)에 따른 준비를 할 것

	<p>나. 예비세정장치는 정기검사 나목1)에 따른 준비를 할 것</p> <p>다. 수면하 배출장치는 정기검사 다목1)에 따른 준비를 할 것</p> <p>라. 통풍세정장치는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</p> <p>마. 스트리핑장치는 정기검사 마목1)에 따른 준비 및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</p> <p>바. 희석수주입장치는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</p> <p>사. 화물가열장치는 정기검사 사목1)에 따른 준비를 할 것</p> <p>아. 전용평형수탱크는 정기검사 아목1) 및 3)에 따른 준비를 할 것</p> <p>자. 화물창은 정기검사 자목1) 및 2)에 따른 준비를 할 것</p>
제2종중간 검사	<p>가. 예비세정장치는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</p> <p>나. 스트리핑장치는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</p> <p>다. 희석수주입 장치는 작동시험 준비를 할 것</p> <p>라. 화물가열장치는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</p> <p>마. 전용평형수탱크는 정기검사 아목1) 및 3)에 따른 준비를 할 것</p>
임시검사 및 임시항해 검사	<p>정기검사의 준비사항 중 해당 검사와 관련된 사항의 준비를 할 것</p>

4. 분뇨오염방지설비

검사 종류	검사 등 준비기준
정기검사	<p>가. 분뇨처리장치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각 탱크의 맨홀을 개방하고 내용물을 제거할 것 2) 부속펌프의 주요작동부분을 분해하고 밸브를 개방할 것 3)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<p>나. 분뇨마쇄소독장치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순환수탱크 및 보조탱크의 상태점검창을 통해 내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것 2) 삭제 <2021. 12. 23.> 3) 필터와 마쇄장치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4) 조립후 압력시험 의 준비를 할 것(최초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) 5)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6) 처리약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준비 할 것 <p>다. 분뇨저장장치</p>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저장탱크의 맨홀 을 개방하고 내용물을 제거할 것 2)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
제1종중간 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분뇨처리장치는 정기검사 가목1)부터 3)까지에 따른 준비를 할 것 나. 분뇨마쇄소독장치는 정기검사 나목1)부터 3)까지 및 5)에 따른 준비를 할 것 다. 분뇨저장장치는 정기검사 다목에 따른 준비를 할 것
제2종중간 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분뇨저장장치는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나. 분뇨마쇄소독장치는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다. 분뇨처리장치는 작동시험 준비를 할 것
임시검사 및 임시항해 검사	정기검사의 준비사항 중 해당 검사와 관련된 사항의 준비를 할 것

5. 대기오염방지설비

검사 종류	검사 등 준비기준
정기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오존층파괴물질(총톤수 400톤 미만인 선박은 제외한다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할론이 포함된 소화장치의 누설시험을 준비할 것 2) 염화불화탄소(CFCs) 또는 염화불화탄화수소(HCFCs)가 포함된 장치의 누설시험을 준비할 것 나.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배출방지설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각 디젤기관 별로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, 질소산화물배출관련 기록부 및 기관변수 기록부를 비치할 것. 이 경우 기관변수 기록부에는 구성부품의 교환 및 조정이 있는 경우 기록·유지되어 있어야 한다. 2) 선상기관변수점검방식을 채택한 경우 각 디젤기관별 한 개의 실린더 개방 또는 예비품을 준비할 것. 다만, 국내항해에 종사는 선박으로서 「선박안전법 시행규칙」 제31조제9항 및 「어선법 시행규칙」 제56조제6항에 따라 개방검사준비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검사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. 3) 선상단순측정방법을 채택한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시험을 준비할 것 4)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한 경우 케미컬저장탱크를 개방할 것 5)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호의 건설기계검사증 및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1호의2의 건설기계 원동기배

	<p>출가스 인증서(해당되는 선박에 한정한다)를 갖추어 둘 것</p> <p>다. 연료유 연료유공급서 및 연료유 견본을 준비할 것</p> <p>라. 유증기수집제어장치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유증기수집제어장치의 승인된 도면을 준비할 것 2) 유증기수집제어장치의 관장치, 산소농도계측감시장치, 압력감시장치의 작동시험을 준비할 것 <p>마. 선내소각기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소각기 검정합격증명서와 폐기물기록부를 준비할 것 2)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소제할 것 3) 작동시험 준비를 할 것 <p>바.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(설치된 경우에 한정한다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케미컬저장탱크를 개방할 것 2)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기술 매뉴얼을 비치할 것 3)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기록부를 비치할 것
제1종중간 검사	<p>가. 각종 설비의 작동시험 준비를 할 것</p> <p>나. 오존층과괴물질(총톤수 400톤 미만인 선박은 제외한다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할론이 포함된 소화장치의 누설시험을 준비할 것 2) 염화불화탄소 또는 염화불화탄화수소가 포함된 장치의 누설시험을 준비할 것 <p>다.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배출방지설비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각 디젤기관별로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, 질소산화물배출관련 기록부 및 기관변수기록부를 비치할 것. 이 경우 기관변수 기록부에는 구성부품의 교환 및 조정이 있는 경우 기록·유지되어 있어야 한다. 2) 선상기관변수점검방식을 채택한 경우 각 디젤기관별 한 개의 실린더 개방 또는 예비품을 준비할 것. 다만, 국내항해에 종사는 선박으로서 「선박안전법 시행규칙」 제31조제9항 및 「어선법 시행규칙」 제56조제6항에 따라 개방검사준비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검사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. 3) 선상단순측정방법을 채택한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시험을 준비할 것 4) 정기검사 나목5)의 준비를 할 것 <p>라. 연료유 연료유공급서 및 연료유 견본을 준비할 것</p>

	<p>마.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(설치된 경우에 한정한다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케미컬저장탱크를 개방할 것 2)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기술 매뉴얼을 비치할 것 3)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기록부를 비치할 것
제2종중간 검사	<p>가. 각종 설비의 작동시험 준비를 할 것.</p> <p>나. 해당되는 경우 정기검사 나목1) 및 나목5)의 준비를 할 것</p>
임시검사 및 임시항해 검사	<p>정기검사의 준비사항 중 해당 검사와 관련된 사항의 준비를 할 것</p>